

신청기관 : 방위사업청

미국 뉴저지법상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

김남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Bar); 법학박사(Doctor of Judicial Scienc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2010).

I. 들어가며

중재(arbitration)는 조정(mediation)과 함께 대표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중재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조정은 일종의 권고와 비슷하여 그 내용이 분쟁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나 조정 모두 일반적인 소송(litigation)에 비하여 비용과 기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재(혹은 조정)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해당 중재 판정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 판정에 대한 이행 강제는 법원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즉, 중재 판정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 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한다. 즉, 중재 판정은 일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과 달리 그 집행을 바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며, 관할을 가진 법원에서 승인(confirmation)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재 판정의 집

* 본 글의 모든 내용은 저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저자와 연관이 있는 어떤 기관 및 조직의 의견이나 입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confirmation), (필요한 경우) 경정(modification or correction), 그리고 결정(entry of judgment)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가 연방법과 미국 뉴저지 주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법과 함께 각 주 별로 관련 주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연방 법과 뉴저지 주 법에 따른 절차를 승인과 경정이라는 각 단계에 따라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II. 관련법률: 적용범위

당사자가 뉴저지 주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연방법과 뉴저지 주법 중 관할 법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방법은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이며, 뉴저지 주의 주법은 뉴저지 통일 중재법(New Jersey Uniform Arbitration Act)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법률이 관할하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1. 연방법(Federal Law)

연방중재법은 미국 내 혹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연방 법률이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연방법은 외국과의 법적 문제 또는 각 주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연방 헌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연방 중재법의 제1장에서는 (미)국내 중재 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은 해상 중재 판정 혹은 국외나 주간 통상(foreign or interstate commerce)과 관련된 중재 판정 중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재 판정에 한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동법 제2장은 뉴욕 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 판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⁰¹ 뉴욕 협약은 관련 분쟁이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와 상관없이 법적인 상사 관계 (legal commercial relationship)로부터 비롯된 분쟁에 대한 중재 합의나 중재 판정에 적용이 된다.⁰² 다만, 전적으로 미국 시민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합의를 기초로 한 중재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뉴욕 협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⁰³

만일 뉴욕 협약과 연방중재법이 그 적용에 있어 상충하는 경우에는 뉴욕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⁰⁴ 뉴욕 협약 체결국에서 결정된 중재 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뉴욕 협약은 이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provision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nd recognition)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와 파나마 협약(Panama Convention) 체결국의 국민 사이의 상사 관계로부터 발생한 중재에 대해서는 파나마 협약이 적용된다.⁰⁵ 연방 중재법 제3장은 이러한 파나마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⁰⁶ 만일 파나마 협약과 뉴욕 협약이 모두 특정 국제 중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욕 협약이 파나마 협약을 대신하여 적용된다.⁰⁷

2. 뉴저지 주 주법(New Jersey State Law)

뉴저지 주법은 기본적으로 중재의 집행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뉴저지 법원 또한 중재 합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자유롭게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

01 우리나라도 뉴욕 협약의 체결국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때 한국 법상 상사 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결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 선언을 하였다.

02 9 U.S.C. § 2.

03 9 U.S.C. § 202.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관계가 (1) 외국에 위치한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2) 외국에서 이행이나 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3) 하나 이상의 외국 국가와 어떤 다른 합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04 9 U.S.C. § 208.

05 9 U.S.C. § 301-307.

06 9 U.S.C. § 203 및 302.

07 9 U.S.C. § 305.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파나마 협약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 (2) 중재 합의의 다수 당사자가 파나마 협약을 인준한 국가의 국민이면서 그 국가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회원국인 경우에는 뉴욕 협약이 아닌 파나마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다.⁰⁸ 즉, 뉴저지 법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쟁이 중재의 대상으로 될 수 없어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쟁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⁰⁹

뉴저지 주에서 중재에 관한 내용은 뉴저지 통일 중재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내용은 Chapter 23B of the New Jersey Statutes Annotated에 규정되어 있다.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계약에 의해서 중재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1)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2) 중재 절차 자체의 수행; (3) 중재판정부의 중재 판정; 및 (4) 중재 판정의 승인, 파기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중재 관련 표준 조항의 내용(terms and conditions)을 강제하고 있다.¹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재를 위해 사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¹¹
- (2) 중재 합의를 집행하고 중재 판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뉴저지 법원의 관할에 관한 내용¹²
- (3) 중재 판정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법원의 명령, 중재 판정을 경정하는 법원의 명령 및 재심리 없이 중재 판정을 파기하는 명령, 및 승인된 중재 판정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권¹³

한편,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단체 협상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적법하게 선출된 노동자 대표 간의 계약에 대한 중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재 합의에 대해 적용이 된다.¹⁴ 그러나,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일정한 뉴저지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상해 관련 혹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08 Garfinkel v. Morristown Obstetrics & Gynecology Assoc., P.A. 773 A.2d 665, 670 (N.J. 2010).

09 Griffin v. Burlington Volkswagen, Inc., 988 A.2d 101 (N.J. Super. Ct. App. Div. 2010).

10 Petersburg Regency, L.L.C. v. Selective Way Ins. Co., 2013 WL 1919556, at *4 (N.J. Super. Ct. App. Div. May 10, 2013).

11 N.J. Stat. Ann. § 2A:23B-5(a).

12 N.J. Stat. Ann. § 2A:23B-26.

13 N.J. Stat. Ann. § 2A:23B-28.

14 N.J. Stat. Ann. § 2A:23B-3(c).

3. 연방중재법과 뉴저지 주 통일 중재법의 관계

실제로 대부분의 중재 합의와 중재 판정은 연방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들은 어떤 합의 조건에서 분쟁의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¹⁵ 법원은 일반적으로 뉴저지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규정을 유효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주간 통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⁶ 즉,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간 통상을 포함하는 경우 연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뉴저지 주 법으로 한 경우 준거법은 뉴저지 주 법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다만 연방 중재법은 중재 합의를 부인하는 주법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⁷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뉴저지 주 법원에 대하여 중재 판정에 대한 관련 결정을 할 배타적 관할을 부여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방법원은 중재 판정 승인에 대한 관할을 갖는데 이는 주법이 뉴저지 법원에 배타적 관할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즉, 주간 통상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한 관할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된 중재 합의의 경우 주간 통상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방 중재법이 주의 중재법을 대신하여 적용되게 된다.¹⁹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간 통상이 포함되는 거래에 대해서 연방 법이 주법 대신 적용된다는 미국 헌법 상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 법원은 중재 합의를 무효화 하는 주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 중재법은 각 주가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일반 계약 법리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 법원이 계약법 상의 원칙에 따른 계약 무효를 이유로 중재 조항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²⁰

¹⁵ ERG Renovation & Constr. L.L.C. v. Delric Constr. Co., 2014WL7506759, at *5 (N.J. Super. Ct. App. Div. Jan. 12, 2015).

¹⁶ N.J. Stat. Ann. § 2A:23B-26.

¹⁷ Volt Info. Scis., Inc. v. Bd. Of Trs., 489 U.S. 468, 472 (1989).

¹⁸ N.J. Stat. Ann. § 2A:23B-26.

¹⁹ Yale Materials Handling Corp. v. White Storage & Retrieval Sys. Inc., 573 A.2d 484, 487 (N.J. Super. Ct. App. Div. 1990); Morgan v. Sanford Brown Inst., 2014WL4388343, at *3 (N.J. Super. Ct. App. Div. Sept. 8, 2014); 9 U.S.C. § 1.

²⁰ Singer v. Commodities Corp. (U.S.A.), 678 A.2d 1165, 1171 (N.J. Super. Ct. App. Div. 1996).

Ⅲ. 관련법률: 절차적 측면

1. 중재 판정의 승인(confirming)

연방 중재법 또는 뉴저지 통일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의 내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이를 요청하는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관할 법원이 연방 법원인지 주 법원인지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해당 절차가 일반 재판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²¹

(1) 연방 절차

중재 판정의 승인은 연방 중재법 제9조에 따라 규율 된다. 연방 중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의 승인을 위해서는 중재 합의가 중재 판정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법원을 적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하기 위해서 중재 판정 후 1년 내에 법원에 이와 같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히 중재 판정을 경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중재 판정을 승인해야만 한다.²² 즉, 법원은 극히 제한된 이유로만 중재 판정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중재 판정은 법원에서 승인된다고 볼 수 있다.²³

연방 중재법은 별도로 물적 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연방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²⁴ 즉, 중재 판정의 승인을 구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관할 요건의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연방 중재법은 뉴욕 협약이나 파나마 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 물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²⁵

중재 계약은 일정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뉴욕 협약, 파

²¹ 9 U.S.C. § 9; N.J. Stat. Ann. § 2A:23B-22).

²² 9 U.S.C. § 9.

²³ Section 10(a)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reeman v. Pittsburgh Glass Works, LLC, 709 F.3d 240, 251 (3d Cir. 2013).

²⁴ Vaden v. Discover Bank, 556 U.S. 49 (2009). 일반적인 관할이란 (1) diversity jurisdiction 및 (2)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을 의미한다.

²⁵ 9 U.S.C. § 203 and 302. 외국과의 통상 및 주간 통상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연방법이 주법을 대신하여 관할한다는 미국 연방 헌법의 기본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마 협약 및 연방 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관할 법원의 지정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²⁶ 당사자 간에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연방 중재법은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역(district)의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⁷, 뉴욕 협약과 파나마 협약은 중재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중재 판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중재 판정이 있는 후 1년 내에 제출해야만 한다.²⁹ 하지만, 뉴욕 협약과 파나마 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이 있는 후 3년 내에 해당 중재 판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외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이라는 제한에 대한 입법적 고려로 생각되면,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성격에 따라 승인 신청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한다.

(2) 뉴저지 주 절차

뉴저지 통일 중재법도 연방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중재 판정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뉴저지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파기 또는 경정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³⁰ 특히,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당사자들이 뉴저지 주에서 중재를 하도록 합의할 경우, 뉴저지 주 법원이 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

뉴저지 통일 중재법도 연방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에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의한 경우 뉴저지 주의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고 있다.³²

²⁶ 9 U.S.C. § 9, 204, and 302.

²⁷ 9 U.S. C. § 9.

²⁸ 9 U.S.C. §§ 204 and 302.

²⁹ 9 U.S.C. § 9. 그러나 미국의 각 항소법원은 1년의 시효의 강제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소법원은 해당 시효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see Photopaint Techs., LLC v. Smartiens Corp., 335 F.3d 152 (2d Cir. 2003)), 제4 및 제8 항소법원 등은 법률 문구("may")의 해석에 비추어 1년 시효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Sverdrup Corp. v. WHC Constructors, Inc., 989 F.2d 148 (4th Cir. 1993); Val-U Constr. CO./ of S.D. v. Rosebud Sioux Tribe, 146 F.3d 573 (8th Cir. 1998).

³⁰ N.J. Stat. Ann. § 2A:23B-22.

³¹ N.J. Stat. Ann. § 2A:23B-26.

³² Allen v. World Inspection Network Int'l, Inc., 911 A.2d 484, 492 (N.J. Super. Ct. App. Div. 2006).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연방 중재법과 달리 특별한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 판정 이후 1년 또는 3년의 기간 제약 없이 중재 판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연방 중재법과 차이가 있다.

2. 중재 판정의 파기(vacating)

연방 중재법과 뉴저지 통일 중재법 모두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그 경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재 판정의 파기 절차에 대해서 연방 절차와 뉴저지 주 절차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방 절차

연방 중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재 판정을 파기할 수 있다.³³

- 부정부패,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 중재인이 편파적이거나 부패한 경우
- 중재인이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hearing) 연기를 거절, 분쟁에 중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증거의 심리를 거절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중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불완전하게 행사하여 최종적이고 명확한 중재 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중재법 상의 위와 같은 파기 이유를 배타적이고 한정적으로(즉, 제한적 열거) 해석하면서 당사자들은 중재 계약으로 그 파기 이유를 확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³⁴ 즉, 당사자들이 중재 판정의 파기 사유를 계약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연방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의 파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중재 판정의 파기를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후 혹은 중재 판정이 있는 후 3개월 내

³³ 9 U.S.C. § 10.

³⁴ Hall Street Associates v. Mattel, Inc., 552 U.S. 576, 586 (2008).

에 해당 신청 서면을 송달해야만 한다.³⁵ 만약 해당 중재와 관련된 소송을 그 전에 제출했다면(예를 들면, 중재를 강제하거나 중재 판정을 확인하는 소송 제기), 중재 판정의 파기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파기의 청구 형태로 파기 신청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³⁶ 즉, 이미 소송으로 해당 중재 판정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 판정의 파기를 청구하는 서면(즉, motion)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중재 판정 후 해당 결정의 파기를 어떤 관련 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파기를 신청하는 서면(즉, petition)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파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이 절차(summary proceeding)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두 진술을 청취하나 별도의 심리를 열지는 않는다. 법원이 중재 판정 파기의 충분한 근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해당 중재 판정을 한 중재판정단으로 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³⁷

(2) 뉴저지 주 절차

뉴저지 통일 중재법은 위에서 설명한 연방 중재법과 동일한 중재 판정의 파기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³⁸ 다만, 추가적으로 당사자 간에 중재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또는 중재인이 적절한 통지 없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뉴저지 통일 중재법과 별도로 뉴저지 보통법(common law)은 공공정책의 이유로 중재 판정의 파기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책의 이유로 중재 판정이 파기되는 경우는 실제 매우 드문 일이다. 또한 뉴저지 주 법원에 따르면, 명백하게 계약의 평범한 문구(plain terms)를 무시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재 판정의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⁴⁰

중재 판정에 대한 뉴저지 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여지는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일 법원이 파기 신청을 거절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별도로

³⁵ 9 U.S.C. § 12.

³⁶ IDS Life Ins. Co. v. Royal All. Assocs., Inc., 266 F.3d 645 (7th Cir. 2001).

³⁷ 9 U.S.C. § 10(b).

³⁸ N.J. Stat. Ann. § 2A:23B-23.

³⁹ N.J. Stat. Ann. § 2A:23B-23.

⁴⁰ State Judiciary v. Prob. Ass'n of N.J., 2015 WL 10322010, at *4 (N.J. Super. Ct. App. Div. Feb. 22, 2016).

없다면 법원은 반드시 해당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⁴¹ 법원이 중재에 대한 합의의 부재 이외의 이유로 중재 판정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인의 사기적 행위 또는 편향적 판단에 따른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재인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중재인에게 환송하여 재 심리를 받도록 할 수 있다.⁴²

중재 판정의 파기를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또는 경정된 중재 판정)의 통지를 받은 후 120일 내에 파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만일 중재 판정 파기의 원인이 부패,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파기를 신청한 당사자는 그러한 이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20일 내에 파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⁴³

3. 중재 판정의 경정(modification or correction)

(1) 연방 절차

연방 중재법 상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 판정을 경정할 수 있다⁴⁴:

- 중재 판정을 위해 참조된 중요한 숫자의 명백한 계산의 오류가 있거나 참조된 사람, 사물 또는 부/동산의 묘사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당사자들이 중재 대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재 판정을 한 경우(만일 그러한 결정이 중재의 대상이 된 주된 쟁점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분쟁의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 판정이 불완전한 경우

이와 별도로 연방 중재법은 중재 판정 취지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정의를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중재 판정을 경정할 수 있다.⁴⁵

하지만, 뉴욕 협정이나 파나마 협정은 중재 판정의 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뉴욕 협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정의 여지를 마련하였지만, 그러한 경정의 여지는 뉴욕 협정이 명백히 표방하

⁴¹ N.J. Stat. Ann. § 2A:23B-23(d).

⁴² N.J. Stat. Ann. § 2A:23B-23(c).

⁴³ N.J. Stat. Ann. § 2A:23B-23(b).

⁴⁴ 9 U.S.C. § 11.

⁴⁵ 9 U.S.C. § 11.

고 있는 중재 판정의 승인에 대한 편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⁴⁶

이와 같은 중재 판정의 경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신청서를 상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서의 제출 후 또는 중재 판정 후 3개월 내에 송달하여야 한다.⁴⁷ 즉 경정 절차는 파기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뉴저지 주 절차

뉴저지 통일 중재법도 연방 중재법과 동일한 경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법원은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청구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명백한 중재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재 판정의 경정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 판정의 경정을 할 수 있다.⁴⁸

중재 판정의 경정을 (간이)신청(summary action)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해당 신청을 해야 한다.⁴⁹ 이 경우 당사자는 경정에 대신하여 중재 판정의 파기를 요구하는 신청을 함께 할 수도 있다.⁵⁰

4. 항소 절차

연방 중재법 및 뉴저지 통일 중재법 모두 일정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보장하고 있다.⁵¹ 즉,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거부, 재심리에 대한 허가 없는 파기 결정, 그리고 경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⁴⁶ Admart AG v. Stephen & Mary Birch Found., Inc., 457 F.3d 302, 309 (3d Cir. 2006).

⁴⁷ 9 U.S.C. § 12.

⁴⁸ N.J. Stat. Ann. § 2A:23B-20.

⁴⁹ N.J. Stat. Ann. § 2A:23B-24(a)

⁵⁰ N.J. Stat. Ann. § 2A:23B-24(c)

⁵¹ N.J. Stat. Ann. § 2A:23B-28, 9 U.S.C. § 16.

IV. 결론 및 시사점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의 시간/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정한 경우 이에 대한 파기 또는 경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재 판정의 국제적 효력은 판정의 국내적 효력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행사되는 것은 법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재 판정의 효력은 섭외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로 간주되어 온 적이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통일 문제가 논의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뉴욕 협약 등이 체결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상호 상충되는 법규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중재 판정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효력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약의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무효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뉴욕 협약의 체결국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외 국가에서 체결된 중재 합의나 결정된 중재 판정의 강제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 및 미국 뉴저지 주 법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그 절차에 차이가 있게 된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절차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대체적으로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연방 법원이 연방 절차에 따라 관할을 갖는 경우와 뉴저지 주를 비롯한 각 주의 주 법원이 관할을 갖는 경우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법률

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 1-16)

New Jersey Uniform Arbitration Act (N.J. Stat. Ann. §§ 2A:23B-1 to -32)

참고 판결

연방법원

Admart AG v. Stephen & Mary Birch Found., Inc., 457 F.3d 302 (3d Cir. 2006)

Hall Street Associates v. Mattel, Inc., 552 U.S. 576 (2008)

IDS Life Ins. Co. v. Royal All. Assocs., Inc., 266 F.3d 645 (7th Cir. 2001)

Sverdrup Corp. v. WHC Constructors, Inc., 989 F.2d 148 (4th Cir. 1993)

Vaden v. Discover Bank, 556 U.S. 49 (2009)

Val-U Constr. Co. of S.D. v. Rosebud Sioux Tribe, 146 F.3d 573 (8th Cir. 1998)

Volt Info. Scis., Inc. v. Bd. Of Trs., 489 U.S. 468 (1989)

(뉴저지) 주 법원

Allen v. World Inspection Network Int'l, Inc., 911 A.2d 484 (N.J. Super. Ct. App. Div. 2006)

ERG Renovation & Constr. L.L.C. v. Delric Constr. Co., 2014WL750675(N.J. Super. Ct. App. Div. Jan. 12, 2015)

Garfinkel v. Morristown Obsterics & Gynecology Assoc., P.A. 773 A.2d 665 (N.J. 2010)

Griffin v. Burlington Volkswagen, Inc., 988 A.2d 101 (N.J. Super. Ct. App. Div. 2010)

Morgan v. Sanford Brown Inst., 2014WL4388343 (N.J. Super. Ct. App. Div. Sept. 8, 2014)

Petersburg Regency , L.L.C. v. Selective Way Ins. Co., 2013 WL 1919556 (N.J. Super. Ct. App. Div. May 10, 2013)

Singer v. Commodities Corp. (U.S.A.), 678 A.2d 1165 (N.J. Super. Ct. App. Div. 1996)

State Judiciary v. Prob. Ass'n of N.J., 2015 WL 10322010 (N.J. Super. Ct. App. Div. Feb. 22, 2016)

Yale Materials Handling Corp. v. White Storage & Retrieval Sys. Inc., 573 A.2d 484 (N.J. Super. Ct. App. Div. 1990)